

【 주간포커스 】

보험업의 시스템위험과 예금보험기금

김해식 전문연구위원

금융회사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고객들의 인출 요구가 집중될 경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많은 나라들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기금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시스템위험에 대한 노출 정도에 따라 금융권역별 안전기금의 형태는 다르다. 시스템위험이 매우 높은 은행업의 경우 사전적립형 기금이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형태인 반면, 시스템위험이 낮은 보험업의 경우 사전적립형 기금을 운영하는 나라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보면, 보험업에 대해서도 사전적립을 요구하는 국내 예금보험제도는 시스템위험에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형태로서 외국과 비교해 보험회사의 부담이 높은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부각된 보험업의 그룹화, 겸업화에 따라 시스템위험 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현행 예금보험기금이 오히려 순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 최근의 저축은행 사태는 은행이 부실하다는 징후가 나타날 때 예금자들의 인출 요구가 쇄도하여 은행이 지급불능에 빠질 수 있고, 해당 은행의 유동성 악화가 다른 은행으로까지 전염될 수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줌.
 -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 부실에 대한 우려는 예금자들이 자신의 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으로 몰려가는 전형적인 인출쇄도(bank run)로 나타났으며,
 - 다른 저축은행들의 예금자들도 예금 인출에 가세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저축은행들로 유동성 위기가 확산되는 이른바 시스템위험(systemic risk)이 발생하였음.
- 금융회사의 경우 고객의 인출 요구가 특정 시기에 집중될 경우 유동성 위기에 처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므로 많은 나라들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은행업과 보험업의 기금 형태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
 - 은행업의 경우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금을 사전에 적립해두는 예금보험기금(deposit insurance fund)이 운영되고 있음.

- 영국을 제외한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사전적립형 기금을 운영
- o 반면, 보험업의 경우 사후각출 형태의 보장기금(guaranty fund)이나 법적으로 최우선 채권자 지위를 부여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며 은행권의 기금 형태와 대조됨¹⁾.
- 한국, 일본, 노르웨이, 프랑스 등이 예외적으로 사전적립형 기금을 운영

□ 예금보험제도 기금의 형태가 은행업과 보험업에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시스템위험에 대한 노출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며,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는 보다 강력한 형태의 시스템위험 대응이라고 할 수 있음.

- o 은행업의 경우 한 은행의 부실이 다른 은행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즉시 투입 가능한 자금을 평상시에 적립하는(pre-funded) 방식으로 기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나,
- o 상대적으로 시스템위험에 대한 노출이 적은 보험업에서는 보험회사들이 사후적으로 각출하여도(post-funded) 보험소비자 보호와 부실 대응에 충분하기 때문임.
- o 따라서 보험업에 대해서도 사전적립형 기금을 운영하는 우리나라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경우이나 가장 적극적인 시스템위험 대응이라 할 수 있음.
 - 더욱이 낮은 시스템위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보험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예금보험료율이 적용되고 있어 시스템위험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보험업의 부담이 높은 수준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소비자와 자산형성 목적의 예금자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 사고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지 않음.²⁾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 금융회사의 시스템위험이 부각되면서 보험업에서도 그룹화, 겸업화 측면에서 시스템위험이 보다 강력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o 금융위기를 계기로 대형 은행 등의 시스템위험이 주목받고 있으며, 세계 최대 보험회사였던 AIG 역시 자회사로 인해 시스템위험이 발생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Global SIFI(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e) 선정에 대형 보험회사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
- o 국내에서도 Domestic SIFI에 일부 보험회사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 우리나라도 IMF 구제금융 이전에는 최우선 채권자 지위를 부여하는 형태로 보험소비자를 보호하였음.

2) 자동차보험의 경우 2010년 기준으로 사고 피해자의 평균 보험금은 1억원을 넘고 있으나 예금자보험법에 따라 5,000만원 보장한도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이 때문에 5,000만원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는 손해보험협회에서 사후각출형 보장기금을 따로 설치하는 등 보험권의 경우 제도가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일부에서는 보증과 재보험을 이유로 보험업의 시스템위험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

□ **현행 예금보호제도가 보험업에 대해 시스템위험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예금보험제도로도 보험업의 시스템위험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임.**

- 국내 보험업의 시스템위험이 다소 과장되게 평가되는 측면이 있음.
 - 국내에서는 보증보험업과 일반 보험업의 겸업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 은행 간 거래에 비견될 보험회사 간 거래(재보험)의 비중이 크지 않고, 재보험사의 부실을 이유로 보험회사가 파산한 사례는 거의 없음.
 - 또한 자산운용에서도 기업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신용파생상품 취급이 미미하여 전체적으로 보험업의 시스템위험은 크지 않음.
- 한편 지주회사 등장 등 보험업의 그룹화, 겸업화 경향으로 시스템위험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이미 시스템위험과 관련하여 보험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을 지고 있는 예금보험기금이 이러한 요구에 적절한 대응책이 될 것임. KiRi